

협약서

의정부공업고등학교와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(이하 「협약기관」)는 “모빌리티 첨단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모빌리티 첨단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(기본원칙) 협약기관은 모빌리티 첨단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약기관 간 협력이 필요성을 인식하고,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 내용을 적극 이행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 협약기관의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협약기관은 모빌리티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2. 협약기관은 모빌리티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3. 협약기관은 모빌리티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.
4. 협약기관은 기업-고교 채용·취업지원,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등에 적극 협력한다.

제4조(협력내용의 승계 등) ① 협약기관은 이 협약 체결 후 기관의 명칭, 기관의 장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제3조에 따른 협력내용을 포괄 승계한다.

- ② 협약기관은 사전 서면합의 없이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각 협력내용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제5조(비밀유지) 협약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협약기간 간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협의조정) 이 협약서에 관한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·결정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) 협약기관은 상호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참여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. 5 . 13 .

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
회 장 김 경



의정부공업고등학교
교 장 김 주 한

